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032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1. 14.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2025. 11. 14.

다. 상정·의결일자: 2025. 11. 26.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가. 제안이유

-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보존·관리·활용 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출연대상: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 2) 출연금액: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 3) 출연목적: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보존·관리·활용사업 위탁운영
- 4) 출연내용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비고
계	170,000	7개사업	
사무국 운영	114,000	직원보수, 수당,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사무국 운영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교육	3,000	관계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발간	4,000	가야사 연구성과 공유 및 가치 공유 총서발간	
가야고분군 사진촬영 및 화보집 제작	21,000	가야고분군 사진촬영 및 화보집 제작을 문화유산 기록보존 및 교육홍보 활용	
미디어 매체 홍보	17,000	미디어 매체 홍보(방송매체 광고, 옥외광고 등)	
가야고분군 가치확산 홍보물 제작	10,000	가야고분군 통합브랜드 개발 활용한 굿즈, 통합홍보물 제작	
예비비	1,000	당해예산의 1% 이내 편성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나)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

2)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3) 합의: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가)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통합보존·관리 및 활용 그리고 세계유산 추가 등재와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등을 위한 통합관리기구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통합관리기구(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관리지원단)도 지자체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였고, 조례 신설을 통하여 관련 협력 구조를 재단 설립으로 공식화했으며, 재단의 법적 성립 요건인 재산 출연 주체가 공동설립자로 공동 출연을 통해 재단이 협력적·광역적 기능을 할 것으로
 - 2026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170,000천 원으로 사무국 운영(직원 보수, 운영비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교육, 연구 총서 발간 등 사용

- 본 동의안은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기본재산(설립자산)에 출연하기 위하여 202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 공공성, 예산의 적정성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11. 26.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